

창업 규정

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7. 12. 08.

담당 : 산학협력단(950-5522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정의)	제3조(주관부서)	제4조(교원창업승인신청의 자격)
제5조(교원창업 신청)	제6조(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)	제7조(창업대상기술의 요건)	제8조(기술실시계약체결)
제9조(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)	제10조(교원창업자의 창업고지 의무)	제11조(정보유출금지)	제12조(교원창업지원)
제13조(창업 승인의 철회)	제14조(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)	제15조(창업기업의 변경신고 및 보고)	제16조(학생창업휴학)
제17조(창업휴학의 신청)	제18조(창업휴학의 신청)	제19조(학생창업 지원)	제20조(학생 창업기업의 의무 등)
제21조(통례의 관리 등)	제22조(제 규정과의 관계)	제23조(기타)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구성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원”이란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말한다.
2. “학생”의 범위는 학부생,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포함한다.
3. “교원 창업”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,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(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)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, 여기서 ‘설립’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 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%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4. “학생 창업”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6. “벤처기업”이라 함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 2 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.